

창원지방법원 2024. 6. 10 선고 2022가단1265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창희

변론 종결2024. 5. 27.

판결 선고2024. 6. 10.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80,8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D를 운영하던 중 2019. 6. 28.경 및 2020. 7. 1.경 각 신용보증기금의 일부 보증 하에 E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1. 9.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2021. 10. 18.경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E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2022. 1. 25. A의 대출원리금 중 보증범위 내인 합계 100,148,7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은 2021. 4. 20.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60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22. 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100,148,778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A은 2021. 11.경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2. 8. 22.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고(2021하단11398), 그에 따라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2. 8. 3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신청을 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 대상행위의 성립여부

가. 부인 대상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계약에 따라 A에

대하여 보유하는 구상금 채권 100,148,778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보증계약이 그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위 보증계약에 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실제로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G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1. 4. 20.경 가지고 있던 적극 재산은 아래 표[적극재산] 기재와 같이 합계 346,885,000원인 사실, 그 무렵 A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소극재산] 기재와 같이 370,338,000원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136,321,000	감정인 F의 감정결과
2	H	85,185,000	G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3	I	94,068,000	
4	J	24,444,000	감정인 F의 감정결과
5	K	6,867,000	
합계	346,885,000		

[소극재산]

1	L	19,500,000	갑 제13, 14호증
2	M저축은행	43,504,000	
3	N저축은행	2,726,000	
4	E 진주여신관리단	130,800,000	
5	G조합	140,000,000	
6	O카드 채권기획팀	22,181,000	
7	P(주)	11,627,000	
합계	370,338,000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A과 피고의 부친이었던 Q(1986년 사망)가 소유하였던 것으로 피고가 모친을 부양하고, 형제들이 모두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던 것으로, A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안정적 자산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인권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의 인정사실에 갑 제6,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R종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9.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37,183,1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A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R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36,321,000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340,018,000원²⁾ 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56,129,204원(= 140,000,000원

× 136,321,000원 / 340,018,000원,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81,053,896원(= 137,183,100원 - 56,129,204원)의 한도에서 부인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0,8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항정언

별지

1) 원고의 2024.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소극재산내역 중 2021. 4. 20. 당시 채무로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2)

1	이 사건 부동산	136,321,000
2	H	85,185,000
3	I	94,068,000
4	J	24,444,000
합계	340,018,000	